

학교법인 예수대학교

2023학년도 제 5차 이사회이록

- 회의 소집일 : 2023년 11월 29일
- 개최 일시 : 2023년 12월 19일(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고궁담
- 개최 기도 : 기도-이철호 이사장

구 분	이사	감사	계
임원 정수	12	2	14
재적 임원	12	2	14
출석 임원	7	0	7
결석 임원	5	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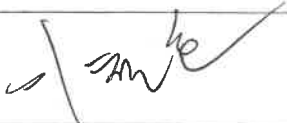
1. 출석현황 :

참석이사	이철호, 윤옥희, 이진일, 김찬기, 한혜실, 윤정모, 유명근	7명
결석이사	박성광, 이병호, 신충식, 조진웅, 윤용순	5명
참석감사		0명
결석감사	김현용, 김현민	2명
배 석 자	박용선 사무국장, 김경휘 기획처장, 형희경 교무처장, 이정미 학생처장	4명

2 안 건 :

제 1호 의안	교원 인사안
제 2호 의안	교직원보수지급규정 개정안
제 3호 의안	교직원 특별상여금 지급안
제 4호 의안	기타(안)
	1.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지명
	2. 이사회 비공개 사항 의결

3. 성원확인 및 개최선언 : 이사장이 재적이사 12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최를 선언하다.

	한 혜 실
---	-------

4. 전차회의록 접수 :

- 이사장이 전 회의록(2023.9.7.)의 처리여부를 묻자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유명근 이사 동의와 한혜실 이사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

5. 대학업무보고 :

- 김경휘 기획처장이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대학기관평가인증 및 사학재정진단 평가) 개편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2023학년도 대학기관평가는 인증되었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 평가되는 대학재정진단지표 대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법인전입금의 지속적인 지원, 신입생 충원, 적정 수준의 이월금 및 적립금, 인건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정미 학생처장이 2024학년도 입시 현황과 박용선 사무국장의 예수병원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각각 설명하다.

6. 회의내용 :

제 1호 의안 : 교원 인사 안

- 이철호 이사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형희경 교무처장 아래와 같이 교원 인사안에 대하여 설명하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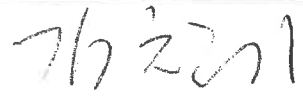

소 속	직 급	성 명	인사내용	임용기간	교원인사 위원회 의결일	교원임용 제청일
간호 학부	부교수					

- 논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유명근 이사의 동의와 한혜실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이사 7명 중 7명이 찬성하여, 교원 인사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2호 의안 : 교직원 보수지급 규정 개정 안

- 이철호 이사장이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박용선 사무처장이 정관 제42조 및 제64조에 근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직원 보수지급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안건이 상정되었고 안건 상정 전 교직원과 2회(2023.11.13./2923.11.20.)의 협의와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상정된 안건임을 설명하다.

- 아 래 -

		
---	---	---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수대학교 교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2조 및 제64조에 근거하여 예수대학교 교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의 최상위 규정인 정관의 보수 규정의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제4조(봉급) 당해연도 3월에서 차기연도 2월의 교직원의 봉급(기본급)은 매년 1월에 고시되는 교육공무원 보수월액을 적용한다.	제4조(봉급) 봉급(기본급)은 물가인상률, 공무원보수인상률, 타 대학 보수 수준을 참고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직원과 협의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우리 대학 교직원 봉급(기본급)표를 별도로 정함
	부칙 1.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논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유명근 이사의 동의와 윤정모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이사 7명 중 7명이 찬성하여, 교직원 보수지급 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3호 의안 : 교직원 특별상여금 지급 안

의 재	기	관
-----	---	---

- 논의 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유명근 이사의 동의와 한혜실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이사 7명 중 7명이 찬성하여, 교직원 특별상여금 지급 안이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하다.

제 4호 의안 : 기타

가.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 지정

- 이사장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제2항에 의거 이사회회의록 간서명자의 추천을 요청하니, 이철호 이사장, 김찬기 이사, 한혜실 이사 이상 3명으로 하자는 유명근 이사의 동의와 이진일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으니 참석 이사 모두 찬성하여 의결하다.

나. 이사회 비공개 의결 사항

- 이사장이 금번 이사회 의결 사항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교원 인사 의결 내용과 대학 교직원의 처우에 관련된 특별상여금 심의 및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는 의견에 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7. 폐회 선언 :

- 이사장이 폐회 성안을 요청하니 윤욱희 이사의 동의와 이진일 이사의 재청으로 이사장이 가부를 물어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이철호 이사장의 기도로 폐회를 선언하니 20시 45분이었다.

이철호	김찬기	한혜실
-----	-----	-----

학교법인 예수대학교 이사장 이철호 이철호

이사 윤옥희 윤옥희

이사 김찬기 김찬기

이사 이진일 이진일

이사 한혜실 한혜실

이사 윤정모 윤정모

이사 유영근 유영근

이철호	김찬기	한혜실
-----	-----	-----